

● ● ● ●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의 중심



2015 제2차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주제 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와 실습

2015. 7. 21(화) 오후 14:00
제주설문대여성문화센터 다목적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여성가족부 지정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Jeju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

2015 제2차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PROGRAM

□ 강 사 : 박 홍 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박사, 젠더N문화연구소 대표)

| 시 간 | 내 용 |
|-------------------|----------------------|
| 13:50~14:00 (10') | ○ 개회 및 인사나누기 |
| 14:00~15:10 (70') | ○ 성인지 정책 및 지표에 대한 이해 |
| 15:10~15:30 (20') | 휴식시간 |
| 15:30~16:30 (60') |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실습 |
| 16:30~16:40 (10') | 휴식 및 발표준비 |
| 16:40~18:00 (80') | ○ 발표 및 토론/정리 |
| 18:00 | ○ 평가 및 폐회 |

2015 제2차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와 실습

박 홍 주

(젠더N문화연구소 대표)

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와 실습¹⁾

박 홍 주

(젠더N문화연구소 대표)

1. 젠더(gender, 성인지) 관점

- 일반적으로 무조건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절차, 기회,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평등’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음. 이처럼 성별 차이와 성차별적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gender blind)인 태도는 표면적으로는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나, 성차별적인 사회현실에서는 오히려 성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 또는 사업이 특정 성(性)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차별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젠더 관점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단순한 지침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인지 훈련과 정책분석 실습을 통해서 젠더에 대한 성찰과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수적임.

1) 젠더(gender, 성인지) 관점

- 젠더 관점,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과 태도
-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다르고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와 요구를 가질 수

1) 본문은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여성가족부, 2013)」, 「여성과 남성의 삶을 바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서(최유진외, 2012)」, 「2015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2015)」, 「함께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교재(장현정·이은아, 2012)」,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14)」 여성가족부 GGI, GII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있음을 이해해야 함.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性)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곧 성별에 따른 이해와 요구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성별 요구의 차이는 **성역할, 성별노동분업, 평가방식, 접근권의 차이, 권력관계에서 비롯됨.** 즉, 여성과 남성은 신체적 차이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역할과 하는 일의 내용, 그리고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접근 정도가 다르고, 불평등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요구가 서로 다름.
- 젠더 관점은 특정성별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성역할, 성별고정관념과 성별 불평등이 섹슈얼리티, 가족, 노동 등의 사회 영역에서 개인의 일상생활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
- 여성이 아니라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적 규범, 제도, 조직 나아가 구조적 질서를 문제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이 아니라 **‘젠더 관계’**에 초점을 두는 성평등 관점.
- 성인지 감수성은 기존에 고려되지 못했던 차이와 다른 시각들을 통해 모든 인간의 권리, 자유, 의무, 복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성평등 실현을 앞당기는 정책도구

길을 잃었을 때

아마도 데이비드 스콧 블랙홀이 자서전 『사물을 보는 방식』에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물어도 사람들이 대답해 주지 않을 때 그곳이 어딘지 알려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무척 짜증스럽다는 내용이었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늘 다니던 건축 현장 옆에서 방향을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실수로 옆길로 들어섰다. 한두 블록쯤 지나 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아차린 다음부터 내가 있는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그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고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실례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 거리 이름이 뭔가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인데요?”

“부탁인데 그냥 이 거리 이름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곳은 올톤 로드예요. 당신은 늘 본브룩 로드로 올라가시지요? 이곳은 거기서 한 블록 떨어진 거리예요.”

“내가 올톤 로드의 어느 쪽에 있나요? 지금 내가 브리스톨 로드를 보고 있나요, 반대쪽을 향해 있나요?”

“당신이 본브룩 로드 위쪽에 사니까 조금 더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제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느 쪽이 문제의 ‘왼쪽’이란 말인가? 볼 수 있는 사람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찾고자 하는 건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놓친 것이지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나는 방향을 잃은 것도 위치를 잃은 것도 아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나는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완벽하게 길을 잃는 것이다.

- 존 헐, 『손끝으로 느끼는 세상』, 우리교육.

○ 도시 공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길을 찾고 회전문을 이용하는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경험에 개인의 젠더, 인종, 국적, 계급, 장애 등의 차이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인간이 어떤 사회적 현상을 관찰하고 설명하거나 또는 해결하고자 할 때조차도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특수한 요소들, 즉 성별, 인종, 국가, 계급, 장애, 결혼여부 등과 같은 차이들에 따라 일상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

○ 성인지 감수성은 개인의 의식과 일상에 대한 성찰 및 도전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사회문화를 바꾸어낼 수 있는 실천수단

2) 화장실과 공원에도 성별이 있다?

- 사회정책은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태도를 반영하므로 가치 개입적인 활동이며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줌. 때문에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가에 따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음. 때문에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무엇을 ‘사실로 인식되는가’에는 이미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 따라서 동일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을 문제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대안의 내용과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물성적(gender blind)인 태도는 이와 반대로 무조건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한 절차, 기회,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성별 차이와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담당자는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여성과 남성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인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나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차별적인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성별 불평등의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 또는 사업이 특정 성(性)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차별을 가져오지 않으려면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성 인지적 관점은 단순히 지침을 따르는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 인지 훈련(gender training)과 정책분석 실습(gender analysis)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짐으로써 성 인지 정책 수행 능력을 가질 수 있음.
- 이처럼 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공원, 화장실, 육교, 계단에도 성별이 작동하고 있음. 물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노동분업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차별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그러나 ‘아주 작은’ 생물학적 차이가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을 결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필수적임.

2. 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1) 성인지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

- 성인지 정책(gender sensitive policy)은 특정 성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성인지 정책은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 성인지 정책은 정책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을 뜻함.
- 성인지 정책은 지금까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때 계층별, 지역별 요소를 고려 하듯이, **성별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정책. 성별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예측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 결과가 양성평등 실현을 가능케 하는지 검토 해야 함.
- 성인지적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강조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특성과 조건,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정책 대상자에게 만족을 주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임.
- 성별 요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실질적 성별 요구 (Practical Gender Needs, PGN)와 성평등을 지향하는 목적을 지닌 전략적 성별 요구(Strategical Gender Needs, SGN)로 나누어짐. 실질적 성별 요구를 만족 시키기 위한 정책이 현실개선정책이라면 전략적 성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평등지향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조치 사항은 현실개선 정책보다는 전략적 성별요구를 반영하여 개선하는 평등지향 적인 개선방안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GIA: Gender Impact Assessment)

- 성별영향분석평가(GIA: Gender Impact Assessment): 국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 성을 차별할 의도를 가지지는 않지만 성에 따라 정책 요구와 삶의 현실이 달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따라서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03.16.)]의 시행으로 3년 이상의 계획, 행정 관련 법규의 재·개정, 세출예산이 집행되는 단위사업 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사업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 성주류화란 성평등 이슈를 정책의 모든 단계에 통합하는 과정으로,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임
-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제10조의 2
 - 양성평등법 제 15조(2015.07.01.)

3) 성인지 통계

- 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삶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성인지 통계가 필수적임. 성인지 통계는 여성과 남성이 처한 현황과 지위를 보여줌으로써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의 통계를 의미함.
- 협의로는 개별 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임.

- 포괄적으로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뿐 아니라 여성 내에서의 불평등도 포함하며, 모든 영역에서의 접근, 통제, 자원 권력,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불평등을 가시화하는 것을 의미함.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를 의미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및 지표의 이해

1)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1) 대상과제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5조와 시행령 2조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는 제개정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이라고 제시되어 있음.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은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함.

○ 2015년 개정방향

-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석평가의 질적 향상 도모
-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양적 확대로부터 질적 수준 제고로 전환
 - * 최소 전년도 과제 수 이상 선정 규정 삭제

⇒ 우수기관 선정 평가지표 중 ‘사업 대상과제 선정의 적정성’ 부분 강화

○ [지방자치단체]

- ’15년 과제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책임 하에 자체 조정 가능

(2) 분석평가 실시

○ 분석평가서 양식 개선을 통해 분석평가 내용의 충실도 제고

- 현행 지침 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상이했던 분석평가서의 각종 통계 기준연도를 동일하게 개선**

* '15년 분석평가서 양식에는 중앙과 지자체 공통으로 '13년 및 '14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함

- 분석평가서의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 **통계 작성 명확화**

* 관련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사유(신규사업 등)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통계청 및 관계기관 등을 통해 성별 분리통계 생산관리 추진

-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신규사업/계속사업' 및 '분석평가 신규과제/분석평가 지속과제'로 구분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 반영 의무화**

-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

○ 2015년 특정평가 대상에 **'시행 중인 법령'**도 포함하여 정책 개선 강화

- 시행중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가능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제1항제1호('14. 9. 25. 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함**

- 분석평가 대상 사업 중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은 비예산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두 예산사업임

예) 2015년에 분석평가를 실시한 예산 사업

: 2016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기금운용계획서) 작성 →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에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함(2016년 2월말까지)

(3) 분석평가 결과보고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4년 개선과제부터 재점검 실시(2015년 종합결과 보고 시 반영)

* 재점검은 다음연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통해서 함.

* 지방자치단체는 2014년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2015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시 재점검 예정('16. 2월말)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제 도입

- 국무회의 보고 및 국회 제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

(4) 운영 및 지원체계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둠

-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을 원칙으로 하되 성평등조례 등 유사조례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정책개선 과제 관리 강화

- 개선과제에 대한 해당 부처/부서의 ‘반영결과 제출서’ 내용이 ‘수용’ 또는 ‘일부수용’ 이라고 판단한 경우

- GIA시스템에 **개선항목 수***를 체크하고 해당 **개선항목을** 선택하여 정책개선을 유형별로 통계화할 수 있도록 관리

*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의견 중 반영결과 제출서에서 수용한 개선의견 수를

의미하며, 1개 과제(법령, 계획, 사업) 당 여러 개의 개선항목 수 도출 가능
⇒ 입력하지 않는 경우 과제 종료 불가

○ 개선과제에 대한 해당 부처/부서의 ‘반영결과 제출서’ 내용이 ‘불수용’ 또는 ‘중단’ 이라고 판단한 경우

- 반드시 그 이유를 GIA시스템에 입력하여 개선의견이 정책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유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선의견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입력하지 않는 경우 과제 종료 불가

○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안동의’인 경우에만 ‘자체개선사례’로 관리 하던 것을 검토결과가 ‘개선의견’*인 경우에도 ‘자체개선사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 자체개선을 하였으나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개선사례로 등록한 후 개선의견 통보

- 개선항목 수 및 개선항목을 체크하여야 등록 완료

- 자체개선사례는 ‘원안동의’로 통보된 건수와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건수를 구분하여 현황* 관리

* GIA시스템>종합현황판>분석평가현황>총괄에서 확인 가능

- 자체개선사례에 대한 추진실적은 ‘기관별 종합결과보고’ 등을 통해 파악

□ 분석평가 과정 상 공무원의 업무 편의성 제고

○ GIA시스템에서 검토의견 통보 시 법령·계획·사업별로 제외통보, 원안동의, 개선의견의 기안문 자동으로 생성

- 내부기안, 연계기안 모두 적용됨

- 수정사항이 있으면 편집 가능

○ 검토의견 통보서 및 반영결과 제출서 작성 예시 수록

○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등의 서식 보완(작성일, 담당자 이메일란 추가 등)

2)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주요일정

| 시 기 | 주 요 내 용 |
|---------|---|
| 연 중 | (각 기관) ○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 대상법령 : 제·개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실시시기 : 관계부처/부서 협의 시 분석평가 실시 ○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 대상계획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실시시기 : '계획 확정 2개월 전, 위원회 상정 30일 이전, 부처/부서 협의 전까지' 중 빠른 시기에 실시 (여성가족부 & 각 기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자체교육, 위탁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
| 1월중 |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실적 보고 |
| 2월말까지 | (각 기관) 2014년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
| 3월말까지 |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 - 국정과제, 연두업무보고, 공약·지시사항 등을 대상 * 가급적 신규과제 30% 발굴 |
| 4월말 |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
| 정기국회 이전 | (여성가족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국무회의 보고·국회 제출 및 공표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종합 분석한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표 |
| 8월말까지 |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사업을 대상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 10월(예정) | (여성가족부) 제10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유공자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를 토대로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 *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 등 포상 성인지예산서 작성 |
| 12월(예정) | (여성가족부)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숍 개최 |
| 12월말 | (여성가족부) 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통보 |

3)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 분석평가 항목 | | 점검 point |
|---------------|----------------------------|--|
| I 성별 구분 | 1. 성별 구분 조항 | • 성별 구분 조항이 있는지 점검 |
| | 2.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
| II 성별 고정관념 | 3.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 •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점검 |
| | 4.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 |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인지 점검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고정관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
| III 성별 특성 | 5. 자격·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 자격·요건 조항 등이 성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자격·요건 조항 등이 있는지 점검 |
| | 6.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 법령상의 자격·요건 조항 등이 결과적으로 어떤 한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지 않는지 점검 • 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위원 자격 요건이 성별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지 등 점검 *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행정안전부, '11.6월) 참조(여성 위원 40% 이상 도달) •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특성 반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

- 제·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에 성별구분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경우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분석하며 성별구분개선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성별고정관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성별고정관념 개선조치의 필요성과 개선계획을 명시하도록 함.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 분석평가 항목 | | 점검 point | |
|------------------------|---|---|--|
| I 비전과 목표 |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
| | 2. 성별 요구도 |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배경, 거주 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
| II 전략 및 중점 과제 | 3. 성별 형평성 | ③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 |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④ 법령 반영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 | ⑤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

- 비전과 목표에서 성별영향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근거와 해당계획 개선안을 제시하도록 함.
- 계획수립시 비전과 목표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 분석평가 항목 | | 점검 point |
|--|---------------|---|
| I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 ① 남녀의 사회 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 | |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
|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3. 법령 |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반영 등 |
| | 4. 예산 | ⑤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 5. 사업 |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반영 등 |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업에 대한 성별요구도를 파악하고 수업수혜와 예산사용에서의 성별형평성을 점검.
- 성별요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할수록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의 개선안 제시 및 실현가능성이 높아짐.

4.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1) 사업에 대한 이해

-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자원 및 중요도 여부 등을 이해해야 성별요구도와 형평성 분석, 개선 가능한 조치사항 제시가 가능함(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연구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광역 또는 기초의 사업백서 및 신문기사 참고).
- 세출예산 단위사업의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임.
- 정책 및 사업의 젠더 관련성은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다루어져야 함.

■ 성별 요구도: 정책의 젠더 관련성

- ① 거시 수준 : 현실에서 여성과 남성의 삶의 경험이 다른 영역이 많이 존재함. 예를 들어 여성은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과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음. 따라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데 거시적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② 구체적인 정책 수준 : 다양한 정책영역에서의 성평등 이슈를 확인해야 함. 관련 법이나 계획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를 통해 정책영역에서 성평등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③ 미시 수준
 - 접근(access) : 여성과 남성 모두 정책/사업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요구(needs) : 정책/사업은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는가 혹은 어떻게 고려하는가?
 - 결과(outcomes) : 정책/사업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쳤는가?
 - 참여(participants) : 정책/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전달과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가?

2) 분석 및 근거자료의 구체화

- 성별요구도 및 성별 형평성의 경우 근거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사업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가 가능함.
 - 여성과 남성이 모든 단계에서 동등하게 참여했는가?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가?
 - 사업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요구를 고려했는가?
 - 성인지 교육의 기회가 있었는가?
 - 성별 분리 자료 및 통계를 사용했는가?

- 성별수혜율을 우선 파악하고, 수혜율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후 관련 통계자료를 찾는 것이 용이함.

- 가능한 수치화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성별 요구도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음(통계자료는 반드시 2013, 2014년 자료를 사용할 것). 해당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함. 단, 시군구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 기존 연구 및 타 도시·구 자료, 정부 통계자료를 활용해도 무방함.

-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해도 좋음.

- 통계 및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제시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기할 것.

3) 개선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 성별요구도 및 성별형평성 분석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성평등을 위해 어떤 조치사항들이 필요한가?
 -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가?

- 2015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하면, 실질적인 성평등 체감효과의 제고를 위해서 개선실적 및 환류점검을 강화하는 추세임. 반영완료 사항보다는 추후 개선사항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해야 함.
-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함. 해당사업 개선안이 구체적일수록 정책 환류의 가능성이 높아짐. 담당자로서 경험했던 사업내용, 홍보, 평가 등 사업 진행 전 과정에 대한 민원, 불편함,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음.
- 개선방안의 제시에 있어 성별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으나,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형평성은 50:50의 균형 제고가 아님(컨설팅할 때 제일 중요). 남성과 여성이 처해있는 다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하는 맥락을 고려하여 장단기적으로 양성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단계별 작성요령 및 사례

1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농촌진흥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 | | | |
|-------|--|------|---------------------------|
| 사업명 | 농기계훈련사업 | | |
| 구분1 | 신규사업(), 계속사업(<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구분2 | 분석평가 신규과제(<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석평가 지속과제() | | |
| 소관 부서 | 부서장 | 부서명: | 성명/전화번호: 홍○○/031-299-0000 |
| | 담당자 | 부서명: | 성명/전화번호: 홍○○/031-299-0000 |
| 붙임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훈련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 | |

| 단계 | 선정 기준 | | 해당 여부 | 주요 내용 |
|-----|-------|--|---|---|
| 1단계 | 제외 사업 |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 육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
| 2단계 | 대상 사업 |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확대에 따라 올바른 사용법, 정비기술 및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과 교육용 농기계 지원으로 농업기계 이용률 및 정비·수리능력 향상 |
| | |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
| | |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

2014년 3월 28일

* 분석평가 지표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

| 분석평가 항목 | | 점검 point | |
|--|------------------|--|---|
|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 |
| |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 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 | | ③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
|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 3. 법령 | ④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성 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 |
| | 4. 예산 | ⑤ 예산 반영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 5. 사업 | ⑥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 통계 구축 등 |

2단계: 개요 작성

- 개요는 사업계획서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고하여 사업목적, 추진근거, 사업 내용, 예산 현황을 기입함.

I. 개 요

■ 사업 목적

- 골목재생사업을 통해 낡고 침체된 지역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정서를 담은 스토리 개발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 근거

- 시장방침(2011.8월)

■ 주요 사업 내용

- 골목재생사업은 단순한 시설개설만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낙후한 골목을 특성화된 가로로 만들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동구 한의약인쇄거리, 중구 대흥동 골목길, 대덕구 정려의 길)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예산* | | |
|---------------------|----------|----------|---------|
| | 2013년(A) | 2014년(B) | 증감(B-A) |
|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재생사업 | 5,413 | 6,000 | 587 |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분석평가 항목 | | 해당 여부 |
|----------|--|---|
| ① 성별 요구도 |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② 성별 형평성 |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 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 |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input type="checkbox"/> 반영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추후 개선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3단계: 성별 요구도

-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별 참여 비율이 아닌 설문조사(불만 원인 또는 만족도), 또는 수혜 차이의 원인을 기술함.
- 성역할 고정관념, 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상이한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선안을 도출
- 성인지 감수성, 젠더 관점이 필수적임

II 성별 요구도

1.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 <분석 근거>

- 돌봄 역할 및 가사일 병행으로 인해 여성은 자녀 이동, 은행·병원가기, 시장·쇼핑 등으로 남성에 비해 통행 횟수는 많지만 비교적 짧은 거리의 통행이 많은 특성을 보임
- 또한 통행수단 이용의 경우, 여성은 승용차 탑승, 걷기, 시내버스 이용 등이 높게 나타나며, 남성은 승용차 운전, 지하철 이용이 높게 나타남
- 보행 안전에 대한 상대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녁시간대에 정점에서 통행의 급격한 감소를 보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골목재생사업 추진 시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밝은 조명 및 CCTV 설치, 유모차 등을 고려한 보도 포장재료 사용 및 흙, 급경사 등의 보도 개선,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등 필요

4단계: 사업 수혜 및 예산의 성별 형평성

- 성별 형평성은 단순히 남녀 비율의 50:50이 아니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수혜 발생을 의미

- 반영 완료 사항에는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 예산반영,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한 내용 등을 기재함. 반영 완료 사항에 기재한 내용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는 기입하지 않음.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_____ *(예 : ○○시민, ○○군 도서관 이용자)

| | 2013년 | | | 2014년 | | |
|--------|-----------|-----------|---------------------|-----------|-----------|---------------------|
| | 사업대상자 (A) | 사업수혜자 (B) |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 사업대상자 (A) | 사업수혜자 (B) | 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 (B/A) |
| 전체 | 명 | 명 | % | 명 | 명 | % |
| 여성(비율) | 명(%) | 명(%) | % | 명(%) | 명(%) | % |
| 남성(비율) | 명(%) | 명(%) | % | 명(%) | 명(%) | % |

* 통계출처 :

* * 통계 미산출한 경우 사유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 | 2013년 | 2014년 |
|--------|--------|--------|
| 전체 | 백만원 | 백만원 |
| 여성(비율) | 백만원(%) | 백만원(%) |
| 남성(비율) | 백만원(%) | 백만원(%) |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 반영완료 사항

- ※ 이미 성별 요구를 고려하여 반영한 내용을 기재

2] 성별 형평성

2.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사업대상 : 골목재생사업지역의 거주 인구*

| | 2012년 | | 2013년 | |
|--------|----------------|----------------|----------------|----------------|
| | 사업대상자 | 사업수혜자 | 사업대상자 | 사업수혜자 |
| 전체 | 107,087명 | 107,087명 | 104,808명 | 104,808명 |
| 여성(비율) | 53,623명(50.1%) | 53,623명(50.1%) | 52,482명(50.1%) | 52,482명(50.1%) |
| 남성(비율) | 53,464명(49.9%) | 53,464명(49.9%) | 52,326명(49.9%) | 52,326명(49.9%) |

* 통계출처 : 대전광역시(2012)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는 골목재생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로 볼 수 있으며, 인구 현황을 볼 때 여성(50.1%)과 남성(49.9%)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보행특성 등 성별 요구도 분석결과를 반영한 사업 운영 필요

- 반영완료 사항 : 해당 없음

3.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분석 근거>

○ 예산배분

| | 2012년 | 2013년 |
|--------|----------|----------|
| 전체 | 3,000백만원 | 5,413백만원 |
| 여성(비율) | | |
| 남성(비율) | | |

• 불특성 다수가 이용하는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예산배분의 성별구분 곤란

○ 성별격차 및 원인분석

-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보도개선 등에 우선적 예산배분 필요

■ 반영완료 사항 : 해당 없음

4단계: 성평등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법령, 예산,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에 따른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2015년 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평가시 개선실적의 비중이 높음.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세부 평가항목 | 해당 사업 개선안 |
|----------------------|-----------|
|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
| 5. 예산 반영 계획 | |
|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

*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이 없다고 분석하였거나, 이미 성별 특성을 반영한 경우는 작성하지 않으며, 추후 개선 계획인 경우만 작성

* 구체적인 법령, 예산, 사업내용 등의 개선계획안을 기재

년 월 일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 세부 평가항목 | 해당 사업 개선안 |
|----------------------|--|
| 4.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 • 골목재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사업 지침에 규정할 계획 |
| 5. 예산 반영 계획 | •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보도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배분할 계획 |
| 6.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 • 아이를 동반한 경우 및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고려하여 밝은 조명 및 CCTV 설치, 유모차 등을 고려한 보도 포장재료 사용 및 흙, 급경사 등의 보도개선,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예정 |

【참고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본개념

- **섹스(sex)** : 생물학적 성.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

- **젠더(gender)** : 사회문화적 성.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행동과 특성, 일반적으로 남성성과 관련된 특징과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만드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젠더 역할과 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정책 개입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가짐.

- **성역할 (gender role)** :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역할과 문화적 기대치. 성역할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

- **성별고정관념(gender stereotype)** : 남성은 남성답고 남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여성답고 여성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된 기대와 규범. 사회와 역사, 문화에 따라 다르며 A와 Not A의 구분처럼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연관성과 공통성이 없는 대립적이며 이분법적 관계로 구성.

- **성별노동분업(gender division of labor)** : 사회적으로 역할, 책임, 활동, 일 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어진 것. 예를 들어 근대 이후 고착화된 남성은 일차적 생계부양자이며 여성은 일차적으로 가사담당자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과 책임의 구분. 공/사 영역의 구분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도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나누어져 있음.

- **성별 불평등(gender-based inequality)** : 여성과 남성은 정보나 의사결정, 자원, 사회적 서비스 등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또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대우받는 조건과 상황.

【참고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관련 사이트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연구 보고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 <http://www.mogef.go.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wdi.re.kr>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jewfri.kr/>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www.ifwf.or.kr>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gfwri.kr>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bwf.re.kr>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http://gwfri.gwd.go.kr>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www.seoulwomen.or.kr>

▣ 성인지 통계 보고서

- 「여성가족통계연보」 여성가족부, 2005년 1호 발간
-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1994년부터 발간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1997년부터 여성주간에 발간
- 「인천 성 인지 통계」인천광역시, 2012, 2014 발간
- 인천시(2011), 『2011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http://www.incheon.go.kr>
- 제주특별자치도청(2014), 『2013 제주여성가족통계』

▣ 성인지 통계 DB 검색 사이트

- 인천시청 통계 사이트 :
<http://www.incheon.go.kr/icweb/html/web1/001005002002001.html>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정보 시스템” <http://gsis.kwdi.re.kr>
-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 <http://www.kosis.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통계포털 <http://statistics.mke.go.kr>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http://stat.mw.go.kr>
-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통계 포털 : <http://hawelsis.kihasa.re.kr>
-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 : <http://stat.mw.go.kr>
- 지식경제부 지식경제통계포털 : <http://statics.mke.go.kr>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 <http://stat.me.go.kr>
- 중소기업정책연구DB : <http://db.kosbi.re.kr>
- 제주도청 통계 사이트 : <http://www.jeju.go.kr/index>